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21462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54,6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G은 2019. 12. 8. 09:1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를 달천계곡 입구 방면에서 북창원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버스 승객 J이 넘어지게 하여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¹⁾.

다. 원고는 2020. 1. 9.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고에 관련된 모든 권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G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2020. 5. 28. ‘G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버스 승객 J에게는 21,227,630원의 손해배상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는 38,826,999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G의 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60,054,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78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에 수령금을 56,200,000원으로 하면서 그 합의내용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 기재한 점, ②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금을 포함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모든 권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망인 및 J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손해배상금(치료비 포함)에 더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G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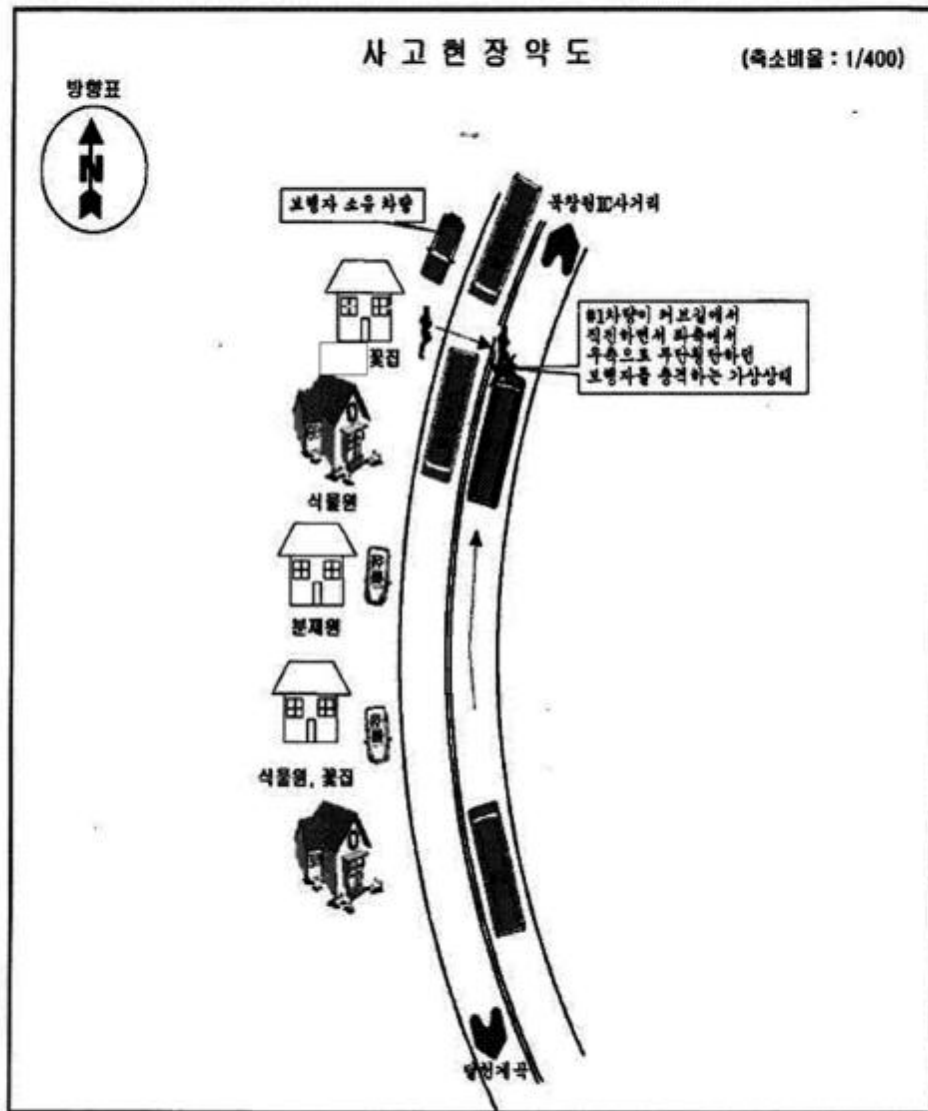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황성광

[별지]



1)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